

(參照)

구정질문서면답변자료

질문의원 :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의원

질문요지 : 노고산동 체육공원 일부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독서실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내용 :

1. 노고산동 체육시설 현황

- 위치 : 마포구 노고산동 25-1
- 부지현황
 - 지목 : 대지(1,421m²)
 - 용도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 소유자 : 마포구, 서강대학교

※ 세부내용

① 체력단련시설

- 면 적 : 105m²
- 시설내역 : 평행봉 1개, 철봉 1개, 통나무 들어올리기 1개, 간이정자(소형) 1개, 의자 5개 등

② 휴식시설

- 면 적 : 320m²
- 시설내역 : 통나무 들어올리기 1개, 평행봉 1개, 윗몸일으키기 1개, 간이정자 1개, 세면대 1개, 의자 5개, 쓰레기통 1개, 조경 1식 등

③ 배트민턴장

- 면 적 : 290m²
- 시설내역 : 배트민턴장 2면, 의자 7개, 쓰레기통 1개 등

④ 게이트볼장

- 면 적 : 498m²(약 1/2은 서강대 소유지)
- 시설내역 : 게이트볼장 1면, 윗몸일으키기 2개, 허리돌리기 2개, 통나무 들어올리기 1개, 철봉 1개, 간이정자(소형) 1개, 의자 12개, 쓰레기통 1개, 조경 1식 등

2. 노고산동 체육시설내 청소년독서실 건립 가능 여부

-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각 동 단위별로 간이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골고루 설치하여 조기운동, 여가활동 등 1일 휴

식공간의 조성으로 주민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일부를 타용도로 변경시 체육활동공간과 휴식공간의 불균형이 예상되며, 부족한 예산을 조개어 설치한 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예산활용의 비효율성이 지대하여 현상대로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노고산동 청소년독서실 설치 계획 여부

- 현재 노고산동에 청소년독서실 건립계획은 없으며 노고산동 인근에 염리청소년독서실(324석, 염리동 소재)이 있으므로 불편하지만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중임.

질문의원 : 김유현의원

질문요지 :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유도하여 영세민들의 자활능력 향상을 가할 수 있는 방안

답변내용 :

- 아파트형 공장 건립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개발하여 저소득 주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현재 가양5단지과 중계 단지에 2개소를 건립 분양하였으나 분양가격이 2~3억원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이 분양신청을 기피하고 신청한 일부기업들도 대다수 무등록 공장으로 크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분양에 어려움이 많아 건립주체인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형 공장건립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우리구 관내 영구임대주택 개발 부지가 없어 아파트형 공장건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차후 우리구 관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시는 관리주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이 병행건립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질문의원 : 김유현의원

질문요지 : 난지도 조립식 주택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답변내용 :

- 안전점검주관 : 시청(난지도관리사업소)
- 합동점검 : 구청
마포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 지적 및 조치사항

- 옥내배선 불량
 - : 배선교체(319가구 2,398m)
 - 누전 차단기 불량
 - : 차단기 교체(21가구)
 - 전기기계 기구 불량
 - : 전기기계 기구 교체 완료(128가구)
 - 가스통 옥내 보관
 - : 옥외 비치토록 홍보
 - 소화기 미비치
 - : 예산 확보 중(시청)
- 각 세대별 1개씩 비치 예정(814개)

질문의원 : 김유현의원

질문요지 : 어린이집 시설장이 운영비를 판공비로 사용한 사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떠한지?

답변내용 :

○ 우리구에는 24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은 영유아보육법 제 29의 규정에 의거 매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93. 6. 14.~6. 26.(12일간)까지 하였으나 시설장이 보조금을 판공비로 사용한 사실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가정 31430-1019호(92.9.28)의거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운영비 계상기준을 책정 조직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별첨과 같이 기관운영비 기준에 의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 계상

가정 31430-1019 '92. 9. 28.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운영비 계상기준을 책정하여 조직운영의 활성화에 기여

□ 지급대상

- 시설장(직무대리 포함)

□ 기준액

- 반 편성수에 따라 기준액 설정
 - 4개반 이하 월 20만원
 - 5개반 이상일 경우 1개반당 1만원씩

추가하되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재 원

- 운영체 부담금 또는 자체수입으로 충당

□ 지급제한

- 기관운영비 집행에 따라 아동급식비, 간식비 등 다른 시설운영 경비가 경감되어서는 아니됨.
- 정부보조금에서 기관운영비 집행불가

질문의원 : 총무재무위원회 김유현의원

질문요지 : 쓰레기 수거 및 운반처리 민영화 방안

답변내용 :

1. 쓰레기수거 민영화 필요성

-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은 공공성을 강조한 나머지 일반적으로 기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예를 들어 민간기업에서는 장비, 자재 등 필요물품을 구입할 때 값이 가장 싸고 품질이 좋다면 구매자 뜻대로 적기에 염가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예산회계법 등 관계규정에 제한이 많아 적기에 장비 자재구입이 어려워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 인력확보 및 인력관리면에서도 민간기업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기업주의 뜻에 따라 채용하고 자질이 현저하게 떨어진 인력은 배제시킬 수 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마음대로 채용하거나 배제시킬 수 없는 등 기업성이 민간기업에 비교하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을 민영화할 필요가 있음.

2. 민영화 확대방안

- 공동주택, 상가, 도로변 빌딩 등을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 대행업체의 수거운반 능력과 대민봉사자세, 민원해소, 성실운영 등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확대범위를 결정하겠으며
- 기존 환경미화원의 이직률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